

보도자료

2020. 6. 25.



대 법 원

Supreme Court of Korea

담당부서	사법지원실
담당자	특별지원심의관 정현미(☎02-3480-1679)
공보관실 ☎ 3480-1451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제12차 정기회의 개최

- 2020. 6. 25. 오전 10:00 대법원에서 회생·파산위원회 제12차 정기회의 개최
- 신규 위원 위촉
 - 2020. 6. 25.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김남근, 명한석, 최유삼, 노용석 위원 신규 위촉
- 제12차 정기회의
 - 2020. 6. 25. 10:00 ~ 12:00 회생·파산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오수근)가 제12차 정기회의 개최
 - 위원회는 제12차 정기회의에서 법원 도산실무 현황, 2019년도 전국법원 도산절차 관계인 업무평정 결과, 도산절차관계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현황 및 이용실태, 개인회생제도개혁 TF 구성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 도산 절차관계인 선임에 대한 회생·파산위원회 의견 조회 절차 전자화 등 효율적 개선 방안,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개인회생제도 실무 현황 점검 필요성을 심의한 후 이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함

건의문의 주요 내용

○ 제3자 관리인, 보전관리인, 감사 선임시 회생·파산위원회 의견조회 절차 전자화 등 효율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회생·파산위원회는 도산 절차관계인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통보받음으로써 감독기능을 행사함. 그러나 각 회생법원과 회생·파산위원회 사이의 현행과 같은 의견교환 방식은 각 회

생법원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위원회의 감독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한 면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특히 성실히 변제계획을 수행하여 온 개인회생채무자 등이 걱정하고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제도 실무 현황을 점검하고, 특별면책 제도 활성화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및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 등으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을 하는 채무자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성실히 변제계획을 수행하던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개인회생제도 실무 현황을 점검하여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들이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 신규 위원 위촉

- 일시·장소 : 2020. 6. 25. 10:00 대법원 1601 회의실
-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김남근, 명한석, 최유삼, 노용석 위원 신규 위촉
- '코로나19'로 위촉식 생략
- 위원 명단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위원장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관 위원	최수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서경환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변호사 위원	이은재	법무법인 광장 구성원 변호사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홍성준	법무법인 태평양 구성원 변호사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대학교수 위원	박재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행정공무원 위원	명한석	법무부 상사법무과 과장
	최유삼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금융전문가 위원	정용석	전 KDB 산업은행 부행장,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학식경험 위원	장경덕	매일경제 논설실장

□ 제12차 정기회의

- 일시·장소 : 2020. 6. 25. 10:00 ~ 12:00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보고안건 : ① 법원 도산실무 현황, ② 2019년도 전국법원 도산절차관계인 업무평정 결과보고, ③ 도산절차관계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현황 및 이용실태 보고, ④ 개인회생제도개혁 TF 구성 관련 보고
- 심의안건 및 의결안건 : 도산 절차관계인 선임에 대한 회생·파산위원회 의견 조희 절차 전자화 등 효율적 개선 방안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개인회생제도 실무 현황 점검 필요성

□ 도산 절차관계인 선임에 대한 회생·파산위원회 의견 조희 절차 전자화 등 효율적 개선 방안

회생·파산위원회는 도산 절차관계인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통보받음으로써 감독기능을 행사함. 그러나 각 회생법원과 회생·파산위원회 사이의 현행과 같은 의견교환 방식은 각 회생법원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위원회의 감독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한 면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개인회생제도 실무 현황 점검 필요성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및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 등으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을 하는 채무자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성실히 변제계획을 수행하던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개인회생제도 실무 현황을 점검하여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들이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 참고 : 회생·파산위원회 구성 및 정기회의 개최 경과

○ 개요

- 회생·파산절차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과 절차 관계인에 대한 체계적·통일적인 감독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회생·파산위원회를 2013. 11. 28. 법원행정처에 설치
- 반기별 1회 정기회의 개최

○ 제1차 정기회의(2013. 11. 28.)

- 관리위원회 실질화 방안 건의

○ 제2차 정기회의(2014. 4. 22.)

- 도산전문법원 설치 건의

○ 제3차 정기회의(2014. 12. 17.)

- 도산전문법관제도 도입 건의

○ 제4차 정기회의(2015. 6. 16.)

- 회생절차의 접근성·효율성 제고 방안 건의

○ 제5차 정기회의(2015. 12. 14.)

- 개인회생·개인파산절차 공정성 제고 방안 건의

○ 제6차 정기회의(2016. 6. 15.)

- 워크아웃 장점 도입 등을 통한 기업회생절차의 개선 방안 건의

○ 임시회의(2016. 10. 13.)

- 회생·파산위원회의 도산감독기능 활성화 방안 건의

○ 제7차 정기회의(2017. 12. 14.)

- 개인회생 외부회생위원 제도 개선 방안
- 도산절차관계인의 이력서 및 평가표 양식 표준화 방안
- 회생·파산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 제8차 정기회의(2018. 6. 28.)

- 관리위원회 제도 개선
- 회생·파산위원회 감독기능의 효율화(도산절차관계인에 대한 DB구축)

○ 제9차 정기회의(2018. 12. 21.)

- 법원 도산실무 현황, 서울회생법원 주요 활동사항
- 채권조사확정재판 분리제도 점검, 도산절차관계인 선임시 고려사항

○ 제10차 정기회의(2019. 6. 27.)

- 도산절차관계인에 대한 평가제도 점검
- 개인파산 신청서류 간소화 검토
- 개인파산관재인 대리 및 외부 회생위원 대리 제도 점검

○ 제11차 정기회의(2019. 12. 18.)

- 개인파산관재인 제도 현황 점검
- 전국 도산 재판부 업무소통방안 점검